

#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제 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STX 엔진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와 협력사 간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당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 (계약체결방식 및 계약방식 선택기준)

당사의 계약체결 방식은 지명견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지명견적계약이라 함은 다수의 견적 참가자를 지명하여 견적서를 접수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지명견적계약은 하기의 수의계약 이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원자재의 가격급등 혹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회사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어려울 경우
3. 적극적인 기술협조나 경쟁력 있는 사전견적 제시로 당사의 경쟁력에 현저히 기여한 협력사
4.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가. 해당 구매품의 공급회사가 단일공급사인 경우
  -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 다. 발주자(고객)가 지정한 회사
  - 라. 특정회사가 자체 개발한 제품을 계약할 경우
  - 마. 특정회사만 수행할 수 있거나 안전확보, 긴급, 영업비밀 보호, 지역발전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 제 3 조(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성과공유제도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동반성장팀'을 운영한다.

## 제 4 조(계약체결 준수사항)

당사는 하도급 법에서 요구하는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의 사전교부

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계약 포함)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나. 당사의 계약서에는 기본계약서와 개별계약서로 구분된다.

다. 기본계약서에는 제조하도급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적용되며, 개별계약의 구체적인 사항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계약이 우선한다.

라. 개별계약서는 발주일자 · 명칭 · 사양 · 수량 · 단가 · 납기 등 구체적 거래 내용을 정한 발주서 등을 말한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가. 단가는 수량 · 품질 · 사양 · 납기 ·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의 조정

A. 협력사는 원재료 가격 변동 등의 이유로 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B. 당사는 협력사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 일 이내에 대금조정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한다.

C. 당사는 협력사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3. 명확한 납기

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해야 한다.

다. 당사는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가. 목적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 협력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라.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가. 당사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납품대금은 당사의 검수가 끝난 주문자재에 대하여 발주서에 명기된 지불조건에 의하여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납품이 완료된 이후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당사와 협력사 간 별도 체결하는 품질보증협정에 따라 그 하자의 보수, 대체품의 납품,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 7. 계약의 해제·해지
 

당사 기본계약서 제 46 조에 의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가.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B. 상대방의 동의없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회사로 합병되어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나.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B.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물품의 가격을 인하 또는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 5 조(계약체결 시 금지사항)

당사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지양한다.

1. 서면 미교부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5.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6. 부당한 반품 행위

7.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9. 당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10.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11. 보복 조치 행위
12. 탈법 행위
13.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4.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제 6 조(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당사는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분쟁발생 시 서면자료에 의해서 해결하며,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부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1. 04. 01 부터 시행한다.